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사항

1. 대주주명		동부캐피탈(주)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- (최초공여일 2005년 8월 22일)
	신용공여종류	CP할인대출
	신용공여금액(원)	- (최초공여액 5,000,000,000)
	신용공여총잔액(원)	4,000,000,000
	만기일	2013년 8월 22일
	신용공여금리(%)	연 8.48%
3. 자금용도		대출연장(본건은 기존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의 변경공시임)
4. 이사회결의일		2012년 8월 7일
5. 기타		<p>- 본 건은 동부캐피탈(주)에 대출 중인 40억원의 대출 만기상환일(2012년 8월 22일)이 도래함에 따라 신용공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임.</p> <p>[변경사항]</p> <p>1)대출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전 : 2011. 8. 22 ~ 2012. 8. 22 - 변경후 : 2012. 8. 22 ~ 2013. 8. 22 → 대출기간 1년 갱신 <p>2)금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전 : 9.14% - 변경후 : 8.48%